

기본운영자금 한도초과금액 분할상환 안내

제308차 운영위원회 의결(기본운영자금 초과좌수 좌당 20만원 한도 축소, 담보운영자금 및 기본운영자금 중복 이용 폐지) 등에 따른 기본운영자금 한도초과금액은 1년간 분할상환이 가능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기본운영자금의 상환기한까지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1. 분할상환 신청자격 : 융자금 연체 또는 융자업무거래 정지 조합원 등 제외

☞ 분할상환 승인 불가능 조합원 예시

- 국세 미납 또는 신용불량정보 등으로 인하여 융자업무 거래정지된 경우
- 조합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을 연체 중인 경우
- 조합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미납 이자가 있는 경우
- 분할상환 승인일까지 기본운영자금 한도초과금액에 대한 이자미납 등

2. 신청기간·방법 : 해당 기본운영자금 상환기한 까지 신청(인터넷창구 또는 영업점)

3. 분할상환금 : 기본운영자금 한도초과금액을 12회로 균등 분할한 금액

4. 상환기간·일자 : 분할상환 승인 이후 분할상환 기간(1년, 12개월)동안 승인일과 매월 같은 날짜에 상환 (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이며, 최종회차 분할상환일은 한도내 금액의 연장 상환기한과 동일함)

5. 적용이자율 : 기본운영자금이자율(신용등급별 연 1.1%~1.2%, 연체 시 연 5.6%).

단, 이자율 및 신용등급 변경 시 변경된 이자율 및 신용등급 적용

6. 분할상환금·이자 납부 : 조합의 관할 영업점 계좌 이체 (CMS 납부 불가)

7. 분할상환금 연체 기준 및 연체할 경우 주요 불이익

☞ 분할상환일에 분할상환금 및 이자금액의 일부라도 미납할 경우 연체 처리

☞ 연체 시 해당 융자금 잔액 및 발생된 이자에 대해 연체이자율이 적용되고,

- 보증 및 융자업무 등 조합과 모든 업무거래가 정지
- 분할상환 승인이 취소되고 기본운영자금 한도초과잔액 및 연체이자 전부를 상환
- 당초 기본운영자금 한도 내 금액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
- 출자증권 등 처분하여 제반 채무의 변제에 충당 및 법적절차 진행
-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회사에게 해당 연체정보 제공 등

8.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할 영업점에 문의

건 설 공 제 조 합 이 사 장

기본운영자금 한도초과금액 분할상환 신청서

귀 조합으로부터 년 월 일 받은 기본운영자금 중 한도초과금액에 대해 기 체결된「거래 약정서」, 조합의 제반 규정에 따른 의무이행과 불임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·확약하고, 해당 융자금의 미납이자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분할상환을 신청합니다.

다 음

1. 신청 내용

분할상환 신청금액	금	원정	국세납세증명서	발급번호				
당초 기본운영자금 용 자 거 래 번 호	-	당 초 용자금액	금	원정	당 초 상환기한	년	월	일

※ 분할상환 신청금액은 기본운영자금 한도초과액 이내이며, 분할상환을 2건 이상 처리시에는 각각 신청

2. 단문문자서비스(SMS) 신청 (필수 기재사항이며, 분할상환일 전 알림문자 발송)

구 분	대표자(또는 재무책임자)		업 무 담 당 자	
성 명				
휴대전화				
개인정보 수집.이용 동의	☐ 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	<서명란>	☐ 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	<서명란>
※ SMS서비스를 받으시려면 개인정보 수집.이용에 동의하셔야 합니다. 위 개인정보는 동의일로부터 거래종료일까지 보유.이용됩니다. 거래종료일 후에는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해 보유.이용됩니다.				

※ SMS서비스를 받으시려면 개인정보 수집.이용에 동의하셔야 합니다. 위 개인정보는 동의일로부터 거래종료일까지 보유.이용됩니다. 거래종료일 후에는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해 보유.이용됩니다.

이름
나이
성별

제출인 : NO.

주 소
상 호
대 표 자

(인)

인감대조

붙임 : 1. 기본운영자금 한도초과금액 분할상환 주요내용 확인서 1부
2. 기본운영자금 한도초과금액 분할상환계획표 1부
3. 국세납세증명서(발급번호 미기재시) 1부
4. 법인인감증명서 1부(필요시). 끝.

담 당	검 토1	검 토2	결 재

건설공제조합 귀중

기본운영자금 한도초과금액 분할상환 주요내용 확인서

1. 분할상환 성격

- 가.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원금의 분할 납부에 해당
- 나. 당초의 만기가 유지되므로 분할상환금 미납 시 연체 처리

2. 분할상환 내용

- 가. 분할상환 방법 : 해당 용자금 분할상환 승인일 이후 1년(12개월)간 매월 원금 균등 분할상환
- 나. 분할상환 금액 : 분할상환 신청금액의 1/12 이며, 수시·조기 상환 가능
- 다. 적용 이자율 : 기본운영자금 이자율

구 분	AAA~A	BBB~B	CCC~CC	C~D
이 자 율	연 1.10%	연 1.13%	연 1.16%	연 1.20%
연체이자율	연 5.60%			

※ 기본운영자금 이자율(연체이자율 포함) 및 신용등급 변경 시 변경된 이자율 및 신용등급에 따라 적용

- 라. 분할상환 원금 및 이자 입금방법 : 조합 영업점 계좌 이체 (이자금액 CMS 납부 불가)

※ 이자금액은 “인터넷창구>>조회>>용자조회>>용자금이자산출” 화면에서 조회 가능

- 마. 분할상환일 : 분할상환기간(12개월) 동안 분할상환 승인일과 매월 같은 날짜(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이며, 최종회차 분할상환일은 한도내 금액의 연장 상환기한과 동일함)
- 바. 상환대상 용자금이 2건 이상인 경우 각각 분할상환 계획서 작성 및 분할상환 신청

3. 연체 시 불이익

- 가. 분할상환일에 분할상환 원금 및 이자금액의 일부라도 미납할 경우 연체 처리
(해당 기본운영자금 한도초과잔액 및 발생한 이자에 대해 연체이자율 적용)
- 나. 보증 및 용자업무 등 조합과 모든 업무가 정지됨
- 다. 분할상환 승인이 취소되고 해당 기본운영자금 한도초과잔액 전부를 상환해야함
- 라. 당초 기본운영자금 한도 내 금액의 기한이익도 상실될 수 있음
- 라. 조합에 담보로 제공된 출자증권 및 그 밖의 재산을 처분하여 조합에 부담하는 제반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 법적절차 진행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
- 마.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회사에게 해당 연체정보가 제공될 수 있음
- 바. 그 밖의 사항은 기 체결한「거래약정서」, 조합 내부규정에 따르겠음